

**『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
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』**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개정이유

-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
-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구성(제3조)
 - 제1항 “추천 위원수” 일부 개정 및 제3항 “위원의 자격” 신설
 - 제4항 “시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 ...” 신설
- 위원의 결격사유(제5조)
 - 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)을 신설
- 사장후보의 추천(제8조)
 -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 추천
 - 사장후보의 모집,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 할수 있음

4. 관련법령 : 지방공기업법 제58조,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중 제3조 “위원회의 구성”, 제5조 “위원의 결격사유”, 제7조 “회의”, 제8조 “사장후보의 추천” 등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